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

발의연월일: 2024. 6. 12

발 의 자:정일영·안도걸·박홍배

윤건영 • 박선원 • 허종식

김한규 · 한민수 · 안규백

민형배 • 한준호 • 양문석

전진숙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우리 사회의 저출산 위기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인구절벽을 막고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최대 1억원까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및 육아와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2021년 영유아 가구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로 97만 6천원이 지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비과세 혜택이 협소하다는 비판 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행 과세체계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이 넘는 직원이 출산하여 1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시 38%의 누진세 율이 적용돼 약 3,8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함.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의 출산 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 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전액 비과세하려는 것 임(안 제12조).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머목 중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를 "6세"로 하고,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아목 4) 중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를 "6세"로 하고, 같은 목에 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 후 3년 안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 후 3년 안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급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처목 및 같은 조 제5호 아목6)의 개정규정은 202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한 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3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소득	
가. ~ 러. (생 략)	가. ~ 러. (현행과 같음)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머. <u>6세</u>
<u>출산이나 6세</u>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	
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	
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버. ~ 저. (생 략)	버. ~ 저. (현행과 같음)
<u><신 설></u>	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 후
	3년 안에 사용자로부터 받
	<u>는 급여</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5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 3)(생 략)
 - 4) <u>종교관련종사자 또는</u>
 <u>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u>
 <u>세</u>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
 런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20
 만원 이내의 금액
 5) (생 략)

자. (생략)

<신 설>

◊}	_
	_
1) ~ 3) (현행과 같음)	
4) <u>6세</u>	_
	_
	_
	_
	_
5) (현행과 같음)	
6)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u>-</u>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	<u>}</u>
런하여 출산 후 3년 약	ŀ

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급여

자. (현행과 같음)